

## 官隸服飾考

—使令과 羅將을 中心으로—

李京子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大學 裝飾美術科

## A Study on Gwan-Rye Costumes

Kyung Ja Lee

Dept. of Decorative Arts, Ewha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is thesis studied the costumes of Gwan-Rye(官隸), the lowest ranking officials of Yi-Dynasty. It researched the written materials and compared it with relics of Gwan-Rye costumes.

The gists of the result are;

- 1) The Koryo tradition of Gwan-Rye costumes continued until the early days of Yi-Dynasty.
- 2) The Gwan-Rye costum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styles. One is Sa-Ryung(使令) style, which consisted of Dan-Ryung(團領) robe and Jo-Geon(皂巾) as head gear. Na-Jang(羅將) style, the another, consisted of Dan-Ryung, Ban-Bi-Ui(半臂衣) and Jo-Geon.
- 3) These styles changed around the days of Yeon-San(燕山), the 10th King of the Dynasty. The Na-Jang of later days wore Cheop-Ri(帖裡) robe instead of Dan-Ryung. And the Sa-Ryung costume was devided into three different styles. They are (1) Gat(笠)—Cheop-Ri (2) Bung-Geo-Ji(氈笠)—Chang-Ui(氅衣) (3) Gat—Kwoe-Ja(快子) styles.

### I. 序 言

官隸는 王朝時代 各官衙에서 부리던 下隸를 이름이다. 그 職分은 구실아치인 衙前보다도 한層 낮은 賤役이니, 大別하면 使令과 羅將이 이에 듈다.

이들의 名稱은 그 所屬과 職能, 時代에 따라 異同이 있다. 經國大典 등을 보면 兵典 京衙前條에 官隸와 羅將, 外衙前條에는 日守 羅將이란 職名이 보인다. 이 가운데 宗親府 議政府 忠勲府 中樞府, 儀賓府 吏曹戶曹 承政院 등에 配屬된 官隸는 使令으로 通稱되었으며<sup>1)</sup>, 義禁府 兵曹 刑曹 司憲府 司諫院 五衛都摠府 平市署 典獄署 등에 配屬된 羅將도, 司憲府에서는 所由, 兵曹 刑曹 都摠府 典獄署에서는 使令, 司諫院에서는 喝道라呼稱했다.<sup>2)</sup> 또 郡衙의 使令과 羅將은 통틀어 羅卒이라

하고 軍衛 所屬은 軍卒, 길을 引導하는 所任을 喝道唱道라 別稱하기도 한다.

本論文은 이들을 통틀어 下隸階級 服飾의 全般的 인 考察을 試圖한 것이다.

筆者は 우리나라 服飾史研究가 下層階級의 服飾에 까지 미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서 別監服小考<sup>3)</sup>를 發表한 바 있다. 이 뒤를 받은 本論文에서 筆자는 官隸服에 관한 文獻記錄을 檢索하여 그 基本定制를 살펴보고 이를 實物史料와 對比했다. 이를 위하여 高大博物館 所藏의 官隸服 遺物 1襲斗 大韓帝國 動駕圖를 參考할 수 있어 多幸이었다.

그러나 王朝時代 下層服飾에 관해서는 文獻上 言及이 적은데다가 實物史料도 王朝末期 것 뿐이라, 研究의 制約이 불가피했고 紙面關係로 官隸服중의 두드러진 몇 가지만을 言及하는데 그쳤다. 後日의 補完을 期

約解 둔다.

## II. 官隸服의 文獻考察

官隸服에 관한 文獻記錄은 經國大典 등의 服飾定制

韓國衣類學會誌

와 이에 關聯된 實錄의 言及, 漢陽歌 春香傳 등 古典文學作品의 服飾描寫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件數가 적고 자세치 못한데다가 年代差・制式差가 있어서一律的으로 比較하기는 어렵다. 服飾定制와 實錄 등의 記錄을 整理하면 表 1과 같다.

表 1. 文獻에 보인 官隸服

文 獻	服	飾	비 고
高麗史	團領・皂衣		螺匠
太宗實錄	淡朱色衣	烏巾・革帶	喝道(1418年)
經國大典 (大典會通同)	青半臂衣 皂團領 土黃團領	皂巾・帶條兒	典獄署 司諫院
燕山實錄 純祖實錄 春香傳(高大本) 春香傳(古本) 漢陽歌	半臂・黑帖裏 帖裏 天翼・까치옷 鵝青袍子・鵝青袍자 잔주름 철리(天翼) 철리・鵝青鵝衣	細緣띠・방울 방거지・藍纏帶 통량갓 喝道	羅將(1506年) 皂隸(1834年) 使令(1725~1834年) 軍奴使令 경원사령(1844年) 羅將

먼저 高麗史에는  
「巡軍螺匠 團領皂衣纏帶,  
所由 團領皂衣  
丁吏 黃衣  
抄 紫衣」<sup>4)</sup>  
라 보인다.

이 중 巡軍螺匠과 所由는 羅將이며<sup>5)</sup> 丁吏와 抄는 使令인데<sup>6)</sup> 이 둘의 服制는 確然히 다르다. 經國大典에,  
「羅將 青半臂衣・司諫院則土黃團領  
皂隸 青團領 公主翁主陪用草錄」<sup>7)</sup>이라 하고,  
太宗實錄에

「喝道其冠帶依丁吏例…淡朱色衣」<sup>8)</sup>라 한데서도 羅將과 使令(皂隸・丁吏・喝道)의 服色差異가 나타난다.  
즉 羅將服은 團領・皂衣 또는 團領・半臂衣의 두 겹 옷  
인데 使令服은 衣만이 보인다.

여기에서 螺匠과 所由의 「皂衣」를 半臂衣類로 推定한다면 羅將服은 高麗一朝鮮을 通해同一하다고 볼 것이다. 또 麗朝 丁吏와 抄의 黃衣・紫衣가 어떤 形制의 웃인지는 分明치가 않으나 朝鮮朝 太宗代 丁吏・喝道의 淡朱色衣와 같은 것이며 이 것이 皂隸의 團領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冠帶는 羅將과 使令에 別差異없이 冠帽는 모두 烏巾 또는 皂巾이며 帶는 條兒이나<sup>9)</sup> 螺匠과 太宗代 丁吏에 纏帶와 革帶가 보인다.<sup>10)</sup> 이 중 纏帶는 融匠服이 戰服類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들 文獻記錄중, 後代인 燕山君 12年(1506年)에 이르러 羅將服으로

「半臂黑帖裡」<sup>11)</sup>라 하여 大典制式과 다른, 帖裡가 등장한다. 이 帖裡는 純祖實錄에

「各營軍卒皆著軍服各司皂隸皆著帖裡即各從其將領官員之所常服而然也」<sup>12)</sup>고 한데서 보듯 國末에는 官隸服으로 널리 着用된다.

漢陽歌와 春香傳 등 文學作品의 官隸服도 그 기본은 帖裡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使令服으로는 「잔주름天翼」<sup>13)</sup> 「八問天翼까치옷」<sup>14)</sup> 「까치옷防牌天翼」<sup>15)</sup> 「紅纏帶青天翼」<sup>16)</sup> 등이며 羅將服은 「天翼위의 鵝青鵝衣」<sup>17)</sup>가 있다.

즉 羅將과 使令이 모두 天翼(帖裡)을 通用하고 있어 純祖實錄의 言及과一致한다. 이것이 大典制式의 官隸服團領과 어떻게 關聯될지는 알수가 있는데 別監服에서 처럼 羅將・使令服에 禮服과 常服・戎服의 別이 있었거나<sup>18)</sup>, 아니면 燕山代以後 國末에 걸쳐 制定와 實際가 달라진 것이라 解釋할 도리밖에 없다. 여하간 18世紀이후, 王朝後期 一般人이 目擊할 수 있었던 官隸服의 기본이 帖裡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여기 나타난 까치옷・鵝衣는 大典制式의 青半臂衣, 燕山實錄의 黑半臂衣와 같은 것이라 볼것인데 글뜻에 비추어 黑色衣라 해야 옳다. 이것은 바로 帖裡一搭護 등 軍服類의 基本形制와 通하는 것이다.

이들 記錄을 比較해 보면 春香傳의 使令服은 모두

羅將服과 基本形制가 같은 대신 漢陽歌에 보인 政院使令服과는 다르다. 京中과 地方官衙의 官隸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春香傳의 使令을 바로 羅將이라 볼 것인지 알수가 없다. 다만 羅將服에는 「王」字 裝飾이 있다는 春香傳의 叙述과 六堂 崔南善의 「後世에 와서는 裕護를 快子라하여 下級軍屬及官隸의 制服이 되어 버렸지 만은…」이라고 言及하고 있음을 留意할 것이다.<sup>19)</sup>

文學作品에 나타난 官隸服은 그 細部描寫가 차세하다.

먼저 冠帽를 보면 政院使令의 「통량갓」(漢陽歌), 使

令의 「孔雀尾 큰갓」「열두눈 박힌 孔雀尾」「흰 깃」(이상 春香傳), 軍奴使令의 「山獸毛벙거지…날랠 勇조썩 봇치고」(春香傳)<sup>20)</sup>, 羅將의 「喝道의 눈을 박은」(漢陽歌) 등이 있다. 이중 使令冠帽는 깃裝飾으로 미루어 笠類·벙거지임을 알만한데 그중에서도 帖裡一갓(政院使令), 快子一戰笠(使令)의 分化를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여기 말한 喝道는 圓形의 裝飾무늬가 있는 고깔이니 定制의 皂巾에 해당하는 것이다.<sup>21)</sup>

이 밖의 服飾說明으로는 春香傳都使令服에 細條띠 무명바지와 行纏 등이 보이니 이는 官隸服에 共通된



圖 1. 使令服(動駕圖·梨大博物館)

것이라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春香傳 使令服의 附屬具로 방울이 나와 있다.<sup>21)</sup>

이상을 綜合해보면 官隸服의 基本은 高麗末에서 朝鮮朝로 傳承되어 定制化하고 그것이 中後期에 들어와 크게 變遷된다고 할 것이다.

### III. 官隸服의 實物考察

官隸服의 實物史料考察은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所藏 大韓帝國 動駕圖<sup>22)</sup>와 高大博物館 所藏 實物一襲을 中心으로 했다.

이들은 모두가 國末 官隸服의 實際를 보여주는 것이다.

#### 1. 動駕圖의 官隸服

動駕圖에는 使令과 羅將 등 많은 官隸가 登場한다. 그들을 服飾形制에 따라 類別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갓一帖裡

兵曹를 除外한 五曹使令의 옷이니, 연한 옥색帖裡에 黑笠을 쓰고 細條띠를 두르고 있다(圖 1). 이것은 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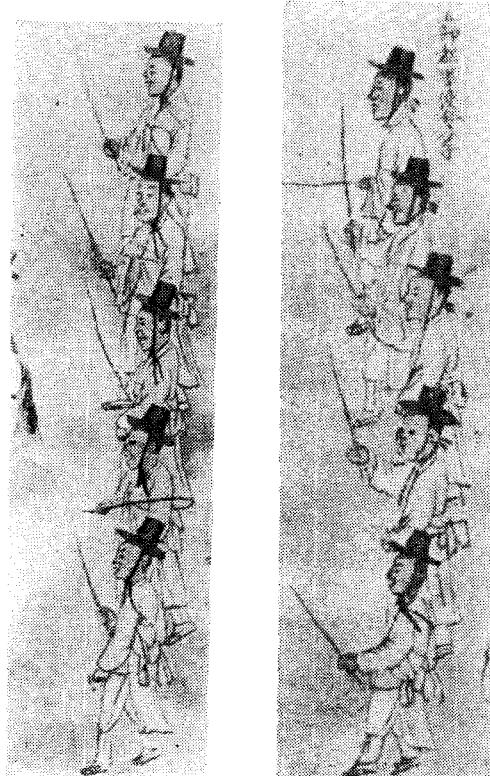


圖 3. 使令服(動駕圖·梨大博物館)



圖 2. 使令 및 羅將服(酒幕·蕙園風俗圖)

服表衣로 帖裡를 着用한 形制이다.<sup>23)</sup>

속옷은 行纏을 두른 바지가 보일뿐이나, 帖裡속에 小氅衣를 입은게 아닐까 疑心한다. 蕙園風俗圖「酒幕」중 羅將옆에 서있는 使令으로 보이는 사람의 服色(갓一帖裡)에 속옷으로 懈衣자락이 엿보이기 때문이다(圖 2).

##### (B) 갓一氅衣

漢城府와 五部都事 使令의 차림이니 연한 옥색氅衣에 黑笠을 쓰고 細條띠를 두르고 있다(圖 3).

氅衣는 士大夫의 燕居服인 中致莫의 받침옷이나 中致莫과 道袍 着用이 许用되지 않는 常民階級에서는 웃 웃으로 입혀졌다고 하였으나<sup>24)</sup> 動駕圖의 使令氅衣는 이와 一致한다. 또 純祖實錄에 「帖裡今變爲氅衣」<sup>25)</sup>라 한것으로 보아 懈衣가 表外衣로 着用됨이 반드시 下隸輩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動駕圖의 懈衣 着裝은 窄袖에 細條帶를 두르고 앞 2 자락을 허리 뒤로 묶은 모습이 懈衣의 形制를 잘 나타내고 있다. 속옷은 역시 行纏을 두른 바지가 보인다.

##### (C) 병거지一抉子

政院使令과 內閣使令의 차림이니, 衣袴위에 옥색快子를 입고 남색纏帶를 둘러 앞으로 느렸다(圖 4). 政院使令의 병거지는 藍色태안을, 內閣使令의 병거지는 보라색 태안을 대고 있다. 이것은 春香傳에 보인 제식과는 一致하나 漢陽歌에 보인 정원사령복과는 차이가 있다.



圖 4. 使令服(動駕圖·梨大博物館)



圖 5. 拿將服(動駕圖·梨大博物館)

(D) 皂巾一帖裡一黑半臂衣  
禁府와 漢城府所屬으로 보이는 羅將과 兵曹羅將의 차림이다(圖 5).

이들은 옥색帖裡위에 짧은 半臂衣를 입고 朱杖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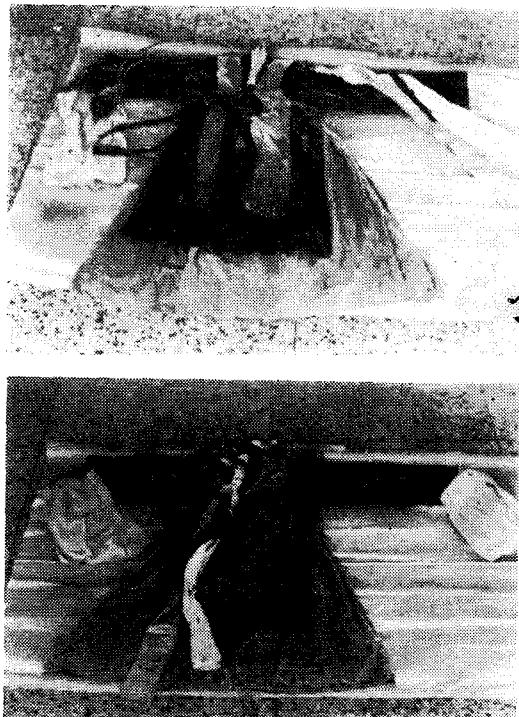


圖 6. 官隸服一襲(高大博物館)

었다. 이 半臂衣는 양옆만을 토고 「王」字를 나타내고 있다. 巾은 고깔모양으로 圓形裝飾이 여럿 보인다.

이 차림은 漢陽歌의 「八十名羅將이」의 羅將服 描寫 와 완전히一致하는데 動駕圖에는 「禁府拿將八十人」이란 註記가 있다.

動駕圖나 漢陽歌의 羅將服은 國領이 帖裡로 바뀐 외에는 黑半臂衣一皂巾의 定制를 그대로 잊고 있다.

## 2. 官隸服 遺物

高麗大博物館 所藏인 이 實物은 帖裡 艱衣 快子의 一襲이다(圖 6). 所藏者側은 이를 使令服이라 짚하고 있으나 確實치가 않다. 이를 實測 觀察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表 2).

### (A) 帖 裡

朱色帖裡로 基本形態는 現存하는 다른 實物과 같으나 ① 총장과 화장이 짚고 ② 소매가 直臂의 窄袖이며, 이를 一般戎服처럼 붙였다 띠었다 할 수가 없고 ③ 동정과 고름이 없는 것이 特徵이다<sup>28)</sup>(圖 7).

이들 特徵은 이 帖裡가 裏衣로 着用된데서 緣由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B) 艰 衣

鴉青色 배로된 直領單袍이다(圖 8). 뒤가 한판이고 양옆은 무가 없이 겨드랑 밑까지 터진 3자락 옷인 데 깃 설 동정이 있다. 소매는 속옷 帖裡에 알맞는 窄袖로 그 끝에는 붙였다 띠었다 할 수 있는 白모시 한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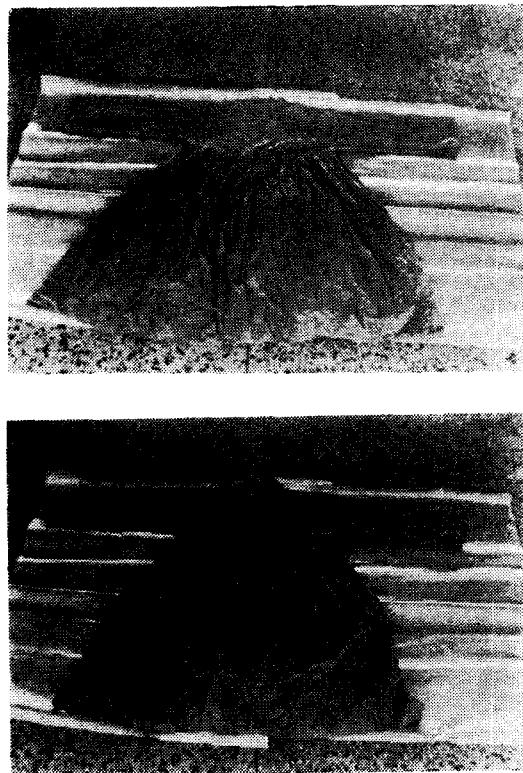


圖 7. 帖裡(高大博物館)・帖裡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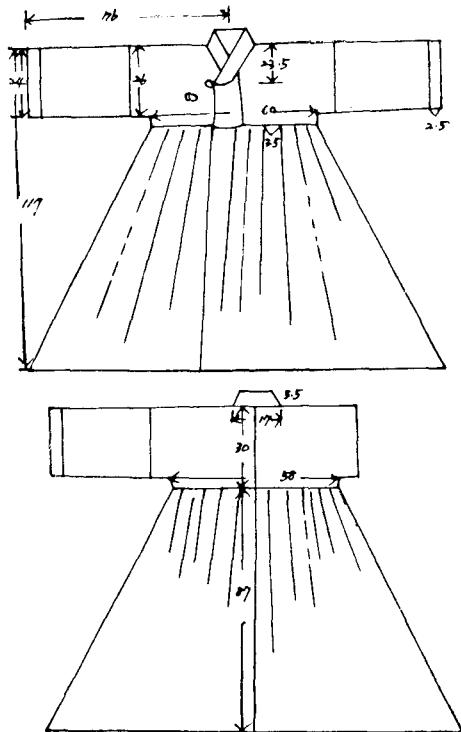
表 2. 實物實測

단위=cm

실물 각부명칭	帖裡	筆衣	快子	비고
총 길 이	117	90	84	上 衣: 30 下 裳: 87
화 장	76	*81		*+47(한삼)
진 동	26	*26	31	*끈달린데 까지
소 매 넓 이	26	24		
수 구	24	23		
뒷 품	58	55	30	
앞 품	60	58	30	
고 대	17	18	20	
깃 넓 이	5.5	10.5		
동 정 넓 이	없 음	3		
걸설넓이(上)	7	10		
(下)	10	19		
고 름 길 이	랫음단추	75		
넓 이		4.5		
옆 트 임		64	전부	
뒤 트 임			41	

이 있다.

홀단의 처리는 5.5cm 넓이의 별도단을 안으로 대고



감쳐서 바느질이 比較的 경교하다.

이 形制는 鎖衣와 같은데 소매 끝의 한삼이 獨特하다.

## (C) 快子

赤土色 베로된 이 快子는 길이가 무릎위에 올라오게 짧다. 뒤는 등 높이부터 티지고 양옆은 거드랑 밑부터 터져있는 4자락 홀웃인데 진동밑에 끈을 달아 연결했다(圖 9).

이 形制는 具軍服의 戰服(搭護)과 比較하여 짧은 총장, 옆트임의 높이와 그 처리 등이 特徵의이다.

## (D) 附屬諸具

附屬諸具로는 무명과 명주로된 垂飾과 방울이 있다(圖 6 參照).

垂飾은 140cm길이의 白色 한폭 무명 2자락, 37cm길이의 연두색 한폭 명주와 藍色 한폭 명주자락을 엉성하게 따은 것으로 快子의 왼쪽 어깨 뒤에 固定시켜 뒤로 느렸다.

놋쇠로 된 방울은 둘레 24cm 크기로, 油紙끈이 달려 있다. 끈은 굵기 2cm, 길이 110cm쯤인데 이 것을 방울고리에 끼어 양쪽 끝을 快子 오른쪽 어깨에 固定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방울의 위치는 어깨 밑 56cm쯤이 된다.

이 附屬諸具중 垂飾은 文獻史料에 나타난 것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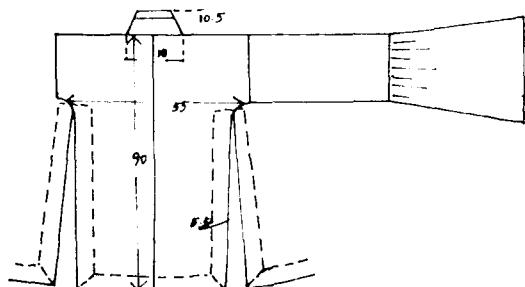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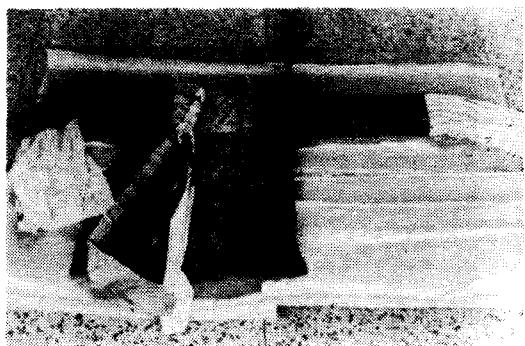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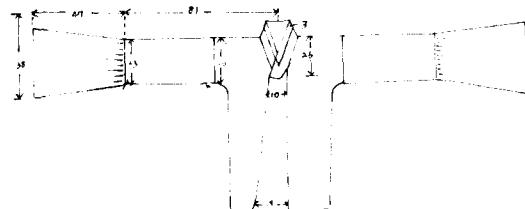


圖 8. 紋衣(高大博物館)· 紋衣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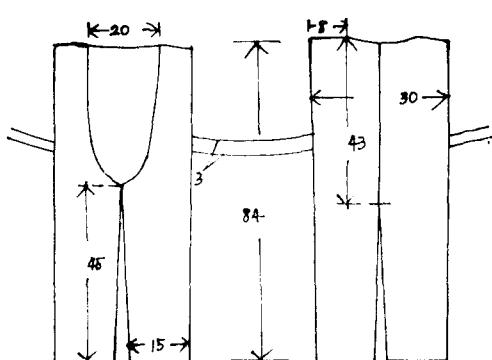


圖 9. 快子實測圖

다. 방울은 春香傳 使令服에 나타나는데 「덜렁 덜렁」 이란形容은 그 것이 꽤 큰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 (E) 構 成

이상 각服飾의 着裝順序는 帖裡—紋衣—快子가 틀림 없는데 快子는 紋衣위에 신로 깨배 固定시켜 놓았 다.

이와 같은 着裝 모습은 動駕圖나 文獻記錄에서 볼 수가 없다. 다만 방울의 存在로 이 것이 使令服이 아닌가 짐작하나 斷定은 어렵다.

## IV. 結 言

이상의 考察을 綜合해 보면 王朝時代官隸服의 基本形制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 하나는 羅將服이니, 團領 또는 帖裡위에 半臂衣(鶲衣)를 겹쳐 입은 것이다. 軍服類에 屬하는 形制다. 이 겹은 羅將이 主로 刑獄에 관계된 官衙에 配屬된 官隸였다는 事實로 說明이 될 것이다. 이들의 冠帽는 衛巾으로 一貫하고 있다.

또 하나 使令服은 團領 帖裡 紋衣 快子만을 表外衣로 입은 차림이다. 이들의 冠帽는 衛巾 笠 병거지 등이 보인다. 이들의 옷은 所屬과 職能에 따라 그 形制와 衣色에 分化가 있었다.

本論文에서 考察한 官隸服은 形制의 特徵을 따라 3 그룹으로 大別되니 ① 高麗史에서 經國大典에 이르는 王朝前期 文獻史料 ② 燕山 實錄 이후 漢陽歌에 이르는 王朝 中後期의 文獻史料 ③ 動駕圖에서 본 國末期 實物史料의 官隸服이다.

이를 통틀어 가장 큰 變化는 團領이 帖裡로 바뀐 것이다. 이 變化는 經國大典編纂期(1460~1485·世祖~成宗以) 직후인 燕山代(1494~1506)에 벌써 보이고 있다.

高麗史 卷七十二에 보면 大內使令인 抄의 服飾에 대하여

「其頭巾與帶仍元制以其微賤不改」라 보인다. 이는 神王十三年 「始革胡服依大明制」하면서 一部 官隸服은 그대로 두었음을 말함이니, 이것이 朝鮮朝에 傳承되고 經國大典의 定制로 定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 官隸服에는 어느 程度 짙은 蒙古色이 남아 있었다고 보겠다. 帖裡의 登場은 이 傳承으로부터의 離脫이며 士大夫의 燕居服이던 帖裡가 이 時期에 이미 下輩에 까지 널리 着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羅將服에 있어서는 團領이 帖裡로 바뀐 것 외에는 큰 變遷 없이 國末까지 내려온 것 같다.

그러나 使令服은 그 表外衣와 冠帽 등의 基本形制까지 여러 가지로 分化·變遷하고 있으니 動駕圖에 나타난 것만 해도 ① 各曹使令 ② 政院·內閣使令 ③ 漢城使令의 옷이 다르다. 이 가운데 各曹使令의 갓-帖裡는 士大夫의 戎服과 같은 構成이고 政院·內閣使令의 병거지-快子는 軍服類에 屬하는 것이며 漢陽府使令의 갓-鎗衣는 一般 常服類와 構成이 같다.

이 밖에 春香傳에는 羅將服과 같은 까치옷이 外衙前使令服으로 登場하나 이 것을 京衙前使令과 同列에 놓을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高麗大所藏의 官隸服이다. 이 實物은 檢옷이란 點에서는 羅將服과 같고 방울이 달린 點에서는 使令服과相通하여 어느쪽이라 斷定이 어렵다.一般的인 構成으로 보면 이 實物은 軍服類에 가까워 오히려 軍奴使令服類가 아닌가 疑心이 가지만, 이 점은 좀 더 많은 實物의 發見과 아울러 軍屬官隸의 服飾考察을 기다려야 考證이 完全할 것이다.

本論文은 官隸服 研究의 始初로서 吏屬官隸중의 一部 服飾을 考察한데 그치고 있다. 經國大典만 해도 闕內各差備 引路 守僕 등에 관한 服飾定制가 言及되고 있고 적으나마 軍屬官隸에 대한 言及이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따로 考察할 機會가 있기를 기약한다.

### 引 用 文 獻

1) 大典會通, 卷之四, 兵典, 京衙前條.

「官隸…今各司 通稱使令」

2) 上揭書, 京衙前, 羅將條.

「今司憲府稱所由 本曹·刑曹·都摠府·典獄署稱使令 司諫院稱喝道…」

- 3) 李京子, 別監服小考, 韓國衣類學會誌, 2 (No.1), 177-183, (1978)
- 4) 高麗史, 卷七十二, 輿服一.
- 5) 螺匠은 羅將의 吏讀. 所由는 司憲府吏屬인 데 司憲府에는 羅將을 配屬한다. (註 1, 註 2 參照)
- 6) 高麗史, 卷七十二, 輿服一.
- 7) 「抄者大內使令奴之名…內侍奉命出使者率行」
- 7)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儀章條.
- 8) 太宗實錄, 卷三十四, 十七年 十月.  
「司諫院請自隸改稱喝道 啓曰 前此司憲府喝道司諫院丁吏引卒服色殊別 今革丁吏及置自隸 與各司無別…請依司憲府例改稱喝道 其冠帶依丁吏例用烏巾草帶淡朱色衣 從之」
- 9) 7)과 같음.
- 10) 4), 8)과 같음.
- 11) 燕山君實錄, 卷六十二, 十二年四月.  
「羅將服色著半臂黑帖裡」
- 12) 純祖實錄, 卷三十四, 四月
- 13) 漢陽歌, 政院使令.
- 14) 高大本, 春香傳.
- 15) 男唱本, 春香傳.
- 16) 漢陽歌.
- 17) 李京子, 別監服小考, 韓國衣類學會誌, 2 (No. 1), 177-183, (1978)
- 18) 崔南善, 朝鮮常識, 第四, 戰服條.
- 19) 古本, 春香傳.
- 20)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大出版部, (1976)
- 21) 「都使令 치례 보소……열두눈 박힌孔雀尾에 방울 차고 텔렁텔렁」
- 22) 梨花女大博物館所藏品인 動駕圖는 朝鮮朝末期 石芸 蔡龍臣(1848~1941)이 폭 29cm, 길이 27m되는 두루마리에 그린 그림이다.
- 23) 李京子, 朝鮮朝 中後期 宮中服飾研究. 一歷代服飾造進記錄을 中心으로, 論叢, 第32輯,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8)
- 24) 崔南善, 前揭書, 第四, 周衣條.
- 25) 12)와同一.
- 26) 23)와同一.